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55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5. 9.
3. 회 부 일 : 2025. 5.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

조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의 범위에서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¹⁾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u>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현행법 제119조는 공무원이나 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엄수의무를 둔 현행법의 취지는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를 보호하고, 규제대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사에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국회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²⁾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등(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제119조의 비밀엄수의무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4조제1항³⁾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출을 요구

2)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3)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부할 수 있을 뿐임.

또한, 국회에 대한 서류등의 제출 의무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함.⁴⁾

□ 국회증언감정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제119조를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은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벌은 현행 「국가공무원법」⁵⁾에 따라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된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등을 통해 직무상 습득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4)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실무적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

□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는 행정부의 사무를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이고, 국회와 행정부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갖는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헌법 제61조제1항7)에서도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한편,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의 한계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될 것임.⁸⁾

6)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위하여 개정안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임.

7)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8) 미국 대법원도 1927년 *McGrain v. Daugherty* 판례에서 “각 의회는 입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권한을 가진다(Each House of Congress has the power to secure needed information in order to legislate)”고 판시하여 의회의 자료제출권을 인정하였고, 1957년 *Watkins v. United States* 판례에서는 “다만 이 권한은 입법 과정의 보조수단으로서만 정당화되기 때문에 의회의 합법적인 임무와 관련되고 이를 증진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Because this power is justified solely as an adjunct to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subject to severallimitations. Most importantly, a congressional subpoena is valid only if it is related to, and in furtherance of, a legitimate task of the Congress. The subpoena must serve a valid legislative purpose)”고 판시하여 의회 자료제출권의 한계를 명시함.(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rump v. Mazars USA, LLP*. 591 U.S. ____ (2020), p.2-3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하는 서류등의 제출 범위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개정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제2호⁹⁾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¹⁰⁾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비밀엄수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는 서류등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들 입법례의 대상 정보(복권당첨자의 식별정보,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는 개정안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감국조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 등에서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주체를 회의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에

9)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10)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회의체의 의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제출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응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봄.

- 이와 더불어,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¹¹⁾)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요구권과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2항과 제6항¹²⁾, 「변호사법」

제89조의9제2항¹³⁾ 등을 참고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서류등의 제출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2)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범위를 법률에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거나, 유출에 따른 책임과 피해에 관한 법적 절차를 두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음.¹⁴⁾

□ 참고로 개정안처럼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이 발의¹⁵⁾되어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국회는 2025년 1월 8일에 본회의에서 재의하였으나 최종 부결된 바 있음.¹⁶⁾

문 의 처
02)6788-5109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14) 이구형,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35호, 2022.12.28.

1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2201459)

16) 당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의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